##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6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병진·김동아·서삼석

황 희·정성호·조계원

이상식 • 민병덕 • 김성환

김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들어가는 난방용 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정유량 밸브의 고장으로 59제곱미터의 집에서 한달 난방비가 200만원 가까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관리책임이 해당 세대에 부과되어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난방비도 해당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각 세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사용시설은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업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요금은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용시설에 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세대 내 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법률 제 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시설"을 "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 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요금이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경우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
| 자는 <u>사용시설</u> 이 기술기준에 | <u>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u> |
|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         | 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      |
| 야 한다.                  | 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
|                        | <u> 포함한다)</u>        |
|                        |                      |
|                        |                      |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점     |
|                        | 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
|                        | 하여 사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     |
|                        | 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
|                        | 서 요금이 사용자의 실제 사용     |
|                        | 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경우 사     |
|                        | 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
|                        |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